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29 선고 2020가단564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20. 10. 15.

판결 선고 2020. 10. 2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. 8. 28. 접수 제78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,000,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,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,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.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로서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12 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0,000,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255,000,000원을 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.1)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지충현

별지

1) 원고는 2020. 10. 15.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은 증거로 조사되지 않았고,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공탁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. 다만 금전공탁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본문과 같다.